

「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(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)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기반 조성
-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 및 기존 숙소동 리모델링 등 체육시설 인프라의 구축으로 구미시의 엘리트 선수들의 체계적 육성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☐ 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

○ 위 치 : 해평면 해평리 472-1번지 일원(해평청소년수련원)

○ 대 상 : 건물 1개동(지상 2층, 연면적 600㎡)

※ 건물 1개동 리모델링(지상 2층, 연면적 679㎡)

※ 사업부지 4,916㎡[시유지 4,100㎡, 국유지 816㎡(대부예정)]

○ 사업기간 : 2025 ~ 2027년

○ 총사업비 : 4,000백만원(전환 1,200 시 2,800)

※ 사업비 산출내역

- 훈련센터 신축(600m²) 2,597백만원(4,329천원/m²당)
- 숙소 리모델링(679m²) 1,000백만원(1,473천원/m²당)
- 설계비 및 감리비 등 403백만원

○ 기준가격 : 2,597백만원(건축공사 설계비, 공사비, 감리비 등)

- 건축물 : 2,597백만원

○ 주요시설 : 훈련센터(싸름장, 헬스장, 사무실, 탈의실 등)

숙소동(숙소 20개소, 샤워실, 화장실 등)

○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

- 도 전환사업 신청 : '25. 4.
-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심의 : '25. 4 ~ 6.
-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: '25. 9.
- 공공건축 사전 검토 : '25. 9 ~ 12.
-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: '26. 1 ~ 7.
- 공사 착공 및 준공 : '26. 8. ~ '27. 8.

○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	1건	600	2,597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1건	600	2,597

취득재산 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시기	사 유	소유자	비 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량 (m ²)					
총계			600	2,597				
취득	건물	해평면 해평리 472-1 외 3필지	600	2,597	2027년	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	구미시	신축

위 치 도

□ 구미 스포츠 훈련센터 조성

○ 소재지 : 해평면 해평리 472-1번지



4. 검토의견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역 체육 인프라를 한 단계 확충하고, 지역 엘리트 선수들의 체계적 훈련 기반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. 특히, 사업부지가 기존 청소년수련원 부지로,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점은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됨.
- 다만, 신축 및 리모델링 이후 발생할 운영비(전기, 수도, 인건비, 유지보수비 등)는 구미시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. 따라서,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운영 계획 및 운영 단계에서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임.